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준속기한 의무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부담금 관리체계 정비〉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5093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제출 배경	4
2.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등(안 제5조의2제1항,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8
3.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안 제6조의2)	23
4.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11조에서 제20조)	29
5. 기타 부담금 제도 개선(안 제2조 및 제5조의3)	46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부

나. 제 출 일 : 2024. 10. 31.

다. 회 부 일 : 2024. 11. 1.

II. 제안이유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담금 설치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납부의무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현행 제5조의2제1항 단서 삭제)

종전에는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부담금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외 없이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함.

나.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등(안 제6조의2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타당성 평가를 요청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타당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부담금 신설에 관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 근거 마련(안 제11조 신설)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의 근거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의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 조치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12조 신설)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심

의위원회에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분쟁조정의 절차(안 제18조 신설)

- 1)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함.
- 2)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과 해당 부과권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하도록 함.
- 3) 해당 부과권자는 신청인과 합의하거나 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합의서 또는 조정서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함.

IV.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제출 배경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함)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 최소화 및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제정되었으며, 부담금 신설·변경 시 심사¹⁾,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²⁾, 부담금운용 평가제도³⁾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⁴⁾ 등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제8조에 따른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실적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담금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001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 20년 이상이 경과 하면서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도 존속 중이고, 관리 체계 강화 등 부담금 제도 개선이 필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2024년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등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존속기한을 의무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이 중 우선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12개 부담금 감면조치는 2024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여 7월 1

-
- 3)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정성 및 존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담금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를 점검·평가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4)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 계획, 제8조에 따른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터 시행중이며, 91개의 부담금 중 18개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부담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협회비 성격의 부담금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22대 국회에 제출(2024.7.30.)⁵⁾하여 기획재정위원회 및 각 개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임.

이후,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화, 신설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및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내용을 담은 동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24.10.31.)하였음.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주요내용]

- (기본방향)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제정 이후 2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부담금 폐지·감면 등 전면 정비와 병행하여, 존속기한 의무화, 신설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및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 (상세내용)
 - ① (존속기한 설정) 부담금 존속기한을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설정
 - 현행 존속기한 명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에 따라 6개 부담금만 설정 중 → 모든 부담금에 예외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 설정
 - ② (신설 타당성평가) 신설 심사 강화를 위한 타당성평가제도 도입
 - 부담금 신설 前 객관적인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실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에서 신설 여부 심의
 - * 현재는 부처에서 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만 제출 중 → (예) 부담금운용평가단 등을 통해 객관적·중립적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실시
 - ③ (신속한 구제)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분쟁 심사·조정
 -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하여 장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쟁송 또는 현재 심판청구 이전에 신속한 권리구제 유도

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2202373호) 및 18개 개별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고)<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부담금 폐지·감면 주요내용]

- (기본방향) 부과목적·원칙에 맞지 않거나, 손쉬운 자원 조달을 위해 국민·기업에 부과하던 32개 부담금을 감면·폐지(제21대 국회 기제출한 4개 별도)
 - 건강·환경,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 정비
 - 그간 90개 내외로 유지 중이던 부담금 수를 69개로 대폭 축소

정비대상	제21대 기제출			
	폐지	감면	관리제외	통합
32개	18개	14개 ※ 12개는 시행령 개정	3개	1개

부처	폐지(18개) / 관리제외(3개) / 통합(1개)	감면(14개)	
금융위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관리제외)		
기재부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	
외교부	■출국납부금	■국제교류기여금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	
문체부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관리제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출국납부금	
산업부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관리제외)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농식품부	-	■농지보전부담금	
환경부	■수질개선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통합) ■수익자부담금(댐건설법)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 2건 통합)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용부	-	■장애인 고용부담금	
국토부	■원인자부담금(도로)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개발부담금
	■시설부담금(산업단지)	■시설부담금(물류단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해수부	■수산자원조성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방제분담금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이하 조문별로 주요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2.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등(안 제5조의2제1항,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 함 - <u>단,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u> ○ 부담금의 <u>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u> - 부담금을 <u>신설 또는 변경</u>하려는 경우에는 <u>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u> 기재부장관에게 부담금 <u>신설 또는 변경</u>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 - <u><호 신설></u> - <u><호 신설></u> -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u>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u> ○ 부담금운용의 평가 -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u>사용내용의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정성 및 존치 필요성 등을</u>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함 - 각 부담금 <u>존치 필요성을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고</u> 그 결과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 함 - <u><삭 제></u> ○ 부담금의 <u>신설 등에 관한 심사</u> - 부담금을 <u>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u>하려는 경우에는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u> 기재부장관에게 부담금의 <u>신설, 변경 또는 존속기한 연장(이하 “신설등”이라 한다)</u>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 1.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 해당 법령안 입법예고 전 2. 부담금 존속기한 연장: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전 -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u><삭 제></u> ○ 부담금운용의 평가 -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u>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u>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함 - 각 부담금 <u>존치 필요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현재는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부담금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앞으로는 예외 없이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추가적으로, 개정안은 부담금을 ① 신설, ②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 ③ 존속기한 연장의 경우를 ‘신설등’으로 용어 정리를 하고, 부담금 신설등의 경우 적용되는 제6조제3항의 6가지 심의 기준에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를 반영하였음(제6호 단서 삭제).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 부담금 신설등 심의 기준(제6조제3항)]

구분	현행	개정안
제1호	<u>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u>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u>부담금의 신설등을 하려는</u>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제2호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현행과 같음)
제3호	부담금의 자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현행과 같음)
제4호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현행과 같음)
제5호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현행과 같음)
제6호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u>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u>(단서 삭제)</u>

또한, 존속기한 설정이 의무화되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

장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제6조제3항에 따른 6가지 심의 기준으로 심의할 예정임.

현행법상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함.⁶⁾ 이 경우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존속기한 명시와 관련하여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부담금이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아 2024년 말 기준 90개 부담금 중 단 6개 부담금만 존속기한을 설정한 상태임.

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존속기한 명시 부담금 현황 (2024.12.31. 기준)]

별표 번호	부담금명	부처	존속기한	관련법
4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금융위	2027.12.3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부칙 <제6804호, 2002.12.26.> 제2조
53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문체부	2028.1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부칙<제8280호, 2007.1.26.> 제2조
5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금융위	2027.12.31.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807호, 2002.12.26.> 제2조 및 제6조
73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중기부	10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 제5항 및 제6항
94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금융위	2026.10.8.	서민금융법 부칙<제18227호, 2021.6.8.> 제2조 *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
95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경부	2028.1.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9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 자료: 기획재정부

* 단,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5.1.1.자로 폐지되었다가, 해당 법 개정으로 재신설됨.(2025.3.25. 시행)

부담금은 국민에게 납세의무 외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로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인 만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이러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여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특히, 의무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할 경우, 부과실적이 미미하거나 부과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는 등 부과 실효성이 저하된 부담금이 기존의 경로의존성으로 인하여 존속하게 되는 경우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행법상 부담금은 ‘3년마다’ 존치 필요성이 있는지 점검·평가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동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존치 필요성을 점검·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음.

[존치평가 관련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u>건전성</u> , 부과절차의 <u>공정성</u> 및 <u>존치 필요성</u>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u>이 경우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3년마다 1회씩</u>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u>건전성</u> 및 부과절차의 <u>공정성</u>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신 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부담금의 <u>존치 필요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존속기한이 길게 설정되는 부담금의 경우 대통령령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오히려 현행(3년)보다 존치 필요성을 점검·평가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기간의 범위를 설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이번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부담금들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개정안의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부담금들의 각 개별법을 개정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개별법의 대통령령으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 개별법의 실제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관련 법률을 기본이 되는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인 만큼, 개정안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각 개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을 통하여
존속기한이 추가되는 부담금 목록(총 64개)]

별표 번호	부담금명	근거 조문
1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3	안전관리부담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5	소음부담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6	출국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제3항
7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관광진흥법」 제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제3항
10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
1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14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16	물이용부담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별표 번호	부담금명	근거 조문
17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19	물이용부담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
21	농산물수입이익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23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제38조
25	배출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2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9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금	「도시개발법」 제58조
30	혼잡통행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31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4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
35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
36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
37	임산물 수입이익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3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산지관리법」 제19조
40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4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
42	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43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제71조
46	배출부과금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47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
48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49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약사법」 제86조의2
50	양곡수입이익금	「양곡관리법」 제13조의2
52	물이용부담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55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56	외환건전성부담금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
57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

별표 번호	부담금명	근거 조문
58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원자력 진흥법」 제13조
5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인삼산업법」 제20조
60	사업주의 부담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61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62	생태계보전부담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63	폐기물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64	재활용부과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65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66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67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69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사업법」 제51조
70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과 통합 예정
73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
74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법」 제30조의3
76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
77	축산물 수입이익금	「축산법」 제45조
79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제61조
82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83	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8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8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출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제3항
87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89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90	방제분담금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
93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96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기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

※ 자료: 기획재정부

다만, 현재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부담금은 각 개별법의 본문 또는 부칙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⁷⁾, 개정안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개별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현재와 같이 각 개별법의 본문 또는 부칙에 존속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법 본문 또는 부칙을 개정하여야 하나, 개정안 부칙에 따라 각 개별법이 개정될 경우 부담금 연장 시 소관 부처의 요청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개정을 통하여 연장되므로 국회가 해당 부담금의 연장 여부를 심사할 수 없게 된다는 한계가 있음.

비록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는 대략적인 범위를 정한 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였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부담금은 국민에게 납세의무 외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인 만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심사를 통한 개별법 개정이 아닌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지속적으로 부담금 존속기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안 부칙의 타당성에 관하여는 논의가

7) (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9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①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8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8) (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개발부담금의 존속기한) 개발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필요해 보임.

따라서 개정안 부칙을 통하여 개별법을 개정할 때 개별법의 본문에 10년 이내의 날짜를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 경우 10년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존속시키려 하는 경우 반드시 국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법의 개정을 거쳐야 하므로 국회가 해당 부담금의 연장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을 것임.

셋째, 개정안 부칙은 부담금 전체는 아니고 존속기한이 기설정된 부담금(4개)⁹⁾ 및 2024.7.30. 제출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2202373호)」 및 각 개별법 개정안에 따라 폐지될 예정인 부담금 등¹⁰⁾을 제외한 64개 부담금에 대하여만 규정하였으므로,

추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폐지 예정이던 부담금이 폐지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¹¹⁾, 해당 부담금도 개정안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소관

9) 단, 기설정된 부담금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⁹⁾은 존속기한 종료일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출연 시작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동 부칙 개정 대상에 포함됨

1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은혜 대표발의, 제2200148호)에 따라 폐지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¹⁰⁾도 제외하였음

11) 예를 들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¹¹⁾의 경우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2202363호)이 제출되었으나, 폐지하지 않고 요율·부과기준을 완화하면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존속기한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존속기한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심사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개별법령도 개정해야 하므로 존속 여부의 타당성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존속기한 연장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존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존속기한 연장 신청 기한을 6개월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 ----- ----- . <단서 삭제>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신설 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의 신설, 변경 또는 존속기한 연장(이하 “신설등”이라 한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 2.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해당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	② -----

현행	개정안
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u>신설 또는 변경</u>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u>신설 또는 변경</u>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u>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u>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 5. (생략) 6. <u>부담금의 존속기한이</u>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u>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u>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u>신설 또는 변경</u>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	----- <u>신설등</u>----- -----. ③ ----- ----- <u>신설등</u> ----- ----- ----- -----. 1. <u>부담금의 신설등을</u> 하려는 ----- ----- 2. ~ 5. (현행과 같음) 6. <u>부담금의 존속기한이</u>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④ ----- ----- <u>신설등</u>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 ----- -----

현행	개정안
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u>건전성</u>, 부과절차의 공정성 및 존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담금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략)	----- ----- <u>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u> -----. <후단 삭제> ② <u>기획재정부장관은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③ ----- <u>제1항 및 제2항</u> -----. ④ <u>제3항</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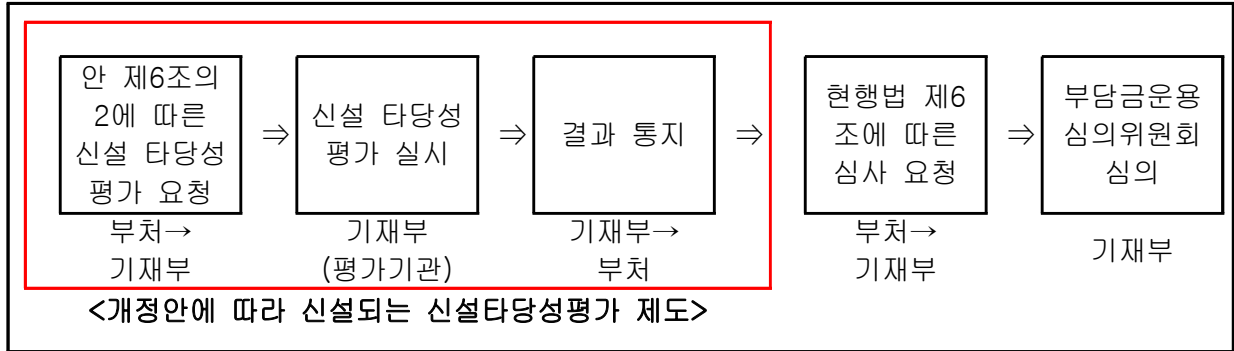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u>신설·변경</u>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 개선 요청사항 3. 4. (생략) ③ ~ ⑤ (생략) 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의 <u>신설·변경·폐지</u>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경제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⑥ 제5항----- ----- -----.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u>신설등</u> ----- ----- 2. 제8조제5항----- ----- ----- 3.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① ----- --- <u>신설등, 폐지</u> ----- ----- ----- ----- ----- <u>부담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u> ----- -. ②·③ (현행과 같음)

3.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안 제6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u>부담금 신설의 타당성 평가</u> - ① 부담금 신설 시 제6조①에 따른 심사 요청 전에 기재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타당성평가를 요청하여야 함 - ② 기재부장관은 ①에 따라 신설타당성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부담금이 제6조③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담금 소관 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 ③ 기재부장관은 신설타당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신설타당성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그 밖에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 ④ 기재부장관은 ③에 따라 지정된 평가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⑤ 기재부장관은 ③에 따라 지정된 평가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③ 2.에 해당하는 평가전담기관이 같은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설타당성평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⑥ 신설타당성평가의 방법·절차, ③에 따른 평가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정안은 보다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부담금 신설 심사 요청 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하여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는 제도(이하 ‘신설타당성평가’라고 함)를 신설하려는 취지임.

[부담금 신설 절차 요약]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¹²⁾하려는 경우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동 계획서를 토대로 부담금의 신설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음.¹³⁾

12)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의 경우에도 동일함

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를 토대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또는 이에 준하는 평가 전담 기관을 통하여 신설타당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평가 결과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전술한 바와 같이 부담금은 국민에게 납세의무 외에 부담을 지우는 행위인 만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금 신설 시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부과수준의 적절성, 신설 시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은 적절한 입법 방안으로 보임.

다만, 정부가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보다 국회의원이 부담금을 신설하는 개별법 제·개정안을 발의하는 사례가 대다수인데¹⁴⁾, 현행법 하에서도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부담금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¹⁵⁾,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신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또는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

14) 예를 들어, 제21대국회 중 부담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원 발의 개정안이 22개 발의됨.

15) 다만,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제3항의 신설 기준 및 헌법재판소의 부담금 정당화 요건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고 있음.

설타당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의원발의 법률안이 회부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해당 부담금의 신설에 대한 신설타당성평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6조의2(부담금 신설의 타당성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타당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신설타당성평가”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설타당성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담금이 제6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설타당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신설타당성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그 밖에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현행	개정안
제6조의2 (생략)	<u>정기준을 갖춘 기관</u> ④ <u>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⑤ <u>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2. <u>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평가전담기관이 같은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3. <u>신설타당성평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u> ⑥ <u>신설타당성평가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조의3 (현행 제6조의2와 같음)

4.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11조에서 제20조)

현행	개정안
<신설>	○ <u>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u> - 권리구제절차 중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이의신청 조치 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재부장관에게 해당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기재부장관은 분쟁조정 신청 받은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분쟁조정사건을 회부하여야 함 ○ <u>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u>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u>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u> ○ <u>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u> ○ <u>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u> ○ <u>분쟁조정 신청의 통지</u> ○ <u>조정의 거부 및 중지</u> ○ <u>분쟁조정절차</u> - 회부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음 - 조정안을 제공받은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봄 ○ <u>비용의 부담</u> -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등 소요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u>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u>

개정안은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장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쟁송 또는 현재 심판청구 이전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

을 조정할 수 있는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취지임.

‘조정(調停)’은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에 중립적인 제3자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분쟁조정 절차임.

개정안에 따른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임.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개요(안)]

- (구성) 9명 이내 : 기재부 및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 + 민간 전문가
 - 위원장은 위원 중 임명·위촉
- (대상) 개별법상 이의신청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절차) 분쟁조정 청구(이의신청 결과통지 20일 이내) → 심사·조정(청구 50일 이내)
 - *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효력) 당사자 간 조정·합의

현행법상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각 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¹⁶⁾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부담금 관련 분쟁은 매년 2~3만건 가량 발생하고 있고, 행정쟁송에 상당한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등¹⁷⁾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1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17) ‘21~’23년 부담금 관련 심판·소송 처리기간(평균) : 심판 231일, 소송 299일

[부담금 분쟁 발생 및 처리 현황(종결 기준)]

(단위: 건,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자체종결 (이의신청)	26,463	207	24,641	123	32,749	998	27,951	443
행정심판	75	916	86	748	55	121	72	595
행정소송	138	2,656	120	1,865	66	956	108	1,826
합계	26,676	3,779	24,847	2,736	32,870	2,075	28,131	2,864

※ 자료: 기획재정부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2202373호)」 및 각 개별법 개정안에 따라 폐지될 예정인 부담금을 제외한 69개 부담금 기준임

따라서 이의신청을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사자 간 조정·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행정쟁송 이전에도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어 보임.

참고로, 유사하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에서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신설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와 위원회 구성 및 절차 등이 유사해 보임.

[민간투자법상 분쟁조정위원회와의 비교]

구분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부담금 분쟁조정위원회(안)
근거	민간투자법 제44조의3	부담금법 개정안 제12조
개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 시, 분쟁을 심사·조정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 시, 분쟁을 심사·조정
구성	9명 이내(위원장 1명 포함) * ① 법률·경영·경제·회계·공학 교수, ② 변호사, ③ 민간투자사업의 설계·건설·자금조달·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명 이내(위원장 1명 포함) * ① 법률·경영·경제·회계·공학 교수, ② 변호사, ③ 금융·산업·에너지·보건· 의료·환경·국토·교통 등 분야 단체·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부담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	임기 2년, 결격사유,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민간투자법 시행령)	임기 2년, 결격사유,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부담금법 개정안)
대상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민간투자사업의 공고,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협상대상자·사업시행자 지정, 정부조달협정 위배 사항 등 * <u>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u> <u>신청 가능</u>	부담금 부과·징수 이의신청 조치 결과 * <u>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u> <u>신청 가능</u>
절차	① 신청서 접수 ② 신청사실 통지, 조정대상여부 판단 ③ 조정전 합의 ④ 사실조사, 의견청취, 자료요청, 현장방문 조사 ⑤ 조정안 작성 및 위원회 상정 ⑥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 ⑦ (수락시) 조정(합의) 성립 (거부시) 조정(합의) 불성립	① 신청서 접수 ② 신청사실 통지, 조정대상여부 판단 ③ 사실조사, 의견청취, 자료요청, 현장방문 조사 ④ 조정안 작성 및 위원회 상정 ⑤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 ⑥ (수락시) 조정(합의) 성립 (거부시) 조정(합의) 불성립
처리 기한	<u>90일 이내</u> (6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u>50일 이내</u>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다만, 처리기한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처리기한을 두었으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관리운영권의 기간, 시설의 사용료, 장래에 발생할 수요 예측, 수입 및 지출의 예측 등 기술적·전문적·정책적인 영역의 분쟁일 가능성이 크므로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처리기한을 필요로 할 것이나, 부담금의 경우 1차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며, 민간투자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분쟁일 가능성이 크므로 개정안의 처리기한이 특별히 부족해 보인다고 볼 수는 없어 보임.

또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¹⁸⁾와 다르게,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의무적으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무관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직접 규정한 「민간투자법」과 달리¹⁹⁾,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2(이의신청) 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에 그 사항과 관련된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이의신청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개별 부담금 근거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²⁰⁾하여 법 구조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부담금 관련 분쟁이 매년 2~3만건 가량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면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의신청 등 개별법상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자체종결되는 사안이 다수임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을 거친 이후에도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금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어 보임.

다만,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개정안에서는 위원 총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소관 부처의 부담금 부과행위로 인한 일반 국민의 권리 침해에 대상으로 하는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일반국민의 권리구제가 주요한 목적인 만큼 공무원의 시각 뿐만이 아닌 민간 부문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임.

따라서 유사한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일정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20)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구성(안)]

-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
- (위원)
 - ①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②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또는 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금융·산업·에너지·보건·의료·환경·국토·교통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부담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참고: 민간위원 비율 관련 입법례]

법률명	타 분쟁조정위원회 입법례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u>

추가적으로, 분쟁의 조정은 개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수의 피해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로서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음.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 같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동종의 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²¹⁾

[참고: 집단분쟁조정제도 관련 유사 입법례]

법률명	입법례
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の特례)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u>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u>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집단분쟁조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u>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u>

부담금의 경우에도 다수의 부과대상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므로 이러한 입법사례와 유사하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권리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만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함께 규정하여 유사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21)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675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1조(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제5조의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중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 조치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분쟁조정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2조(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가.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현 행	개 정 안
	<u>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u> 나.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u> 2. <u>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u>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u>법률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또는 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u> 나. <u>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 다. <u>금융·산업·에너지·보건·의료·환경·국토·교통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부담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④ <u>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u><신 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5.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회부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속

현행	개정안
	<u>한 법인·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u>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6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해당 부과권자에게 그 회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부과권자는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7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현행	개정안
<신 설>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특별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판 청구 또는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해당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조정의 절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및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의 사실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현행	개정안
	<u>명을 받은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u> <u>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출입조사는 사건의 조정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해당 부과권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u>⑦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과 해당 부과권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신청인과 해당 부과권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는 그 합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u> <u>⑧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에게 그 조정안을 제공하여야 한다.</u>

현 행	개 정 안
	⑨ 제8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공받은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는 그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⑩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신청인 및 해당 부과권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⑪ 해당 부과권자는 제7항에 따라 신청인과 합의하거나 제10항에 따라 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합의서 또는 조정서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용의 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2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신 설>	
<신 설>	

현행	개정안
	<u>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5. 기타 부담금 제도 개선(안 제2조 및 제5조의3)

현 행	개 정 안
○ 정의 - 부담금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u>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u>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 가산금 등 - 증가산금: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u>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u> 금액	○ 정의 - 부담금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u>특정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u>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 가산금 등 - 증가산금: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u>부담금에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u> 금액

개정안은 부담금의 정의를 보완하고 증가산금 요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등 부담금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첫째, 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감안하여 부과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정의를 보완함.

현행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이란 부과권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3월 약간의 자구 수정만 거쳤을 뿐 2001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정 당시의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부담금을 정의하면서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현행	개정안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 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을 부여 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u>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u>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 ----- ----- ----- ----- <u>-- 특정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u> ----- ----- ----- -----.

23)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84 결정, 1998. 12. 24. 선고 98헌가1 결정,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결정 등

둘째, 증가산금 요율을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현행법 제5조의3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면서 가산금 및 증가산금 요율을 정하고 있음.

이 중 증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월 단위’로 1개월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1.2%)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부담금 등의 가산금을 월 단위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업·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일 단위 부과 방식 도입 및 헌법상 의무인 납세의 의무에 비해 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특별히 중하게 규율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국세기본법」상 기준과 맞출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2021년 5월 당시 「국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수준인 1일당 10만분의 25(0.025%) 수준으로 개정한 바 있음.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증가산금 관련 개정 연혁]

구분	종전 (2010.3.~2021.6.)	현행 (2021.6.~현재)	비고
증가산금 부과 (제5조의3 제2항제2호)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 등에 더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기간 <u>1개월당</u> 체납된 부담금의 <u>1천분의 12</u> 에 상당하는 금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 등에 더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기간 <u>1일당</u> 체납된 부담금의 <u>10만분의 25</u> 에 상당하는 금액	· 월 단위 → 일 단위 · 당시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 · 2021.6. 개정됨

그러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2022년 2월 개정되어 납부지연가산세 요율이 1일 10만분의 25에서 1일 10만분의 22로 인하됨에 따라 (일 0.025→0.022%), 다시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요율이 「국세기본법」의 요율보다 상대적으로 중하게 규율되게 되었음.

따라서, 현재 「국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구조와 동일하게 부담금 제도에서도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증가산금 요율을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도록 대략적으로 규정한 후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체적인 요율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가산금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가산금 부과 (제5조의3 제2항제1호)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 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 된 <u>부담금의 100분의 3</u> <u>에 상당하는 금액</u>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 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 된 <u>부담금에 100분의 3</u> <u>을 곱한 금액</u>	· 「국세기본법」 ²⁴⁾ 제47조의4제1항제3 호와 동일 기준임 · 문구 수정
증가산금 부과 (제5조의3 제2항제2호)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 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 등에 더하여 부과 하는 가산금 등: 체납기 간 1일당 체납된 <u>부담금</u> <u>의 10만분의 25에 상당</u> <u>하는 금액</u>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 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 등에 더하여 부과 하는 가산금 등: 체납기 간 1일당 체납된 <u>부담금</u> <u>에 금융회사 등이 연체</u> <u>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u> <u>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u> <u>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이자율을 곱한 금액</u>	· 「국세기본법」 제47 조의4제1항제1호와 동일한 구조로 개 정

2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

참고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법령에서 위임받은 증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수준으로 인하(일 0.025→0.022%)할 계획임.²⁵⁾²⁶⁾

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2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2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부담금법 도입 22년만에 전면 개정을 통해 부담금 관리체계 및 국민 권익보호 강화”(2024.10.29.)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u>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u>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 ----- ----- ----- ----- ----- <u>특정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u> ----- ----- ----- -----.
제5조의3(가산금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해당 법령에 정할 때에는 그 가산금 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 등: <u>채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u> 2. 채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 등에 더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등: 채납기	제5조의3(가산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 ----- ----- <u>부담금에 100분의 3을 곱한</u> ----- 2. ----- ----- -----

현행	개정안
간 1일당 체납된 <u>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u> 상당하는 금액	----- <u>부담금에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u> ----- -----

문 의 처
02)6788-5153

